

##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)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, 장애인전형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1월 8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선발개요(1개 직위, 총 1명)

지원코드	인원	주요 담당업무	근무부서(근무지)
사무보조 (장애인전형)	1명	○ 사무보조 및 기타 행정 업무 - 내부 회의자료 취합 - 소속 부서원 복무 관리(출장, 근무상황 등)	규제혁신추진단 (서울특별시)

### 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채용일('25.1월중) ~ '25.7.31.
  - ※ 규제혁신을 위한 한시 조직의 업무 보조 인력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
  - ※ 규제혁신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, 근무실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 - 2025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   - ※ (기본급) 월 209만원 내외, (수당)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
    - ※ (보험)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
      - \*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
- 근무지 :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(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)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  - ※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가능(수당 별도 지급)

### 3. 응시자격요건[최종시험(면접시험)예정일 기준]

- 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2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준용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시험예정일(면접일) 기준 6개월 이내 전역(소집해제) 예정자 포함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  - \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**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**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## 4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### ② 2차시험 :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
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## 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5.1.8(수)~'25.1.15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고용포털(워크투게더)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</li> </ul>
원서접수	'25.1.8(수)~'25.1.15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전자우편)</li> </ul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5.1.20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</li> </ul>
면접전형	'25.1.23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지</li> </ul>
최종합격자 발표	'25.1.24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</li> </ul>

## 6. 원서접수

○ 접수기간 : '25. 1. 8.(수) ~ '25. 1. 15.(수) 18:00

○ 제출방법 : 관련 서류는 **e-mail**로만 접수

- e-mail: [opminsa@korea.kr](mailto:opminsa@korea.kr)

※ 전자우편 접수는 **마감일('25.1.15.) 18:00**까지 도착분에 한함

## 7. 제출서류 안내

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**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(모아찍기 금지)**

※ 제출서류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**반드시 서명하여 제출**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**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**

제출서류	비고
1. 응시원서 1부 : <b>필수서류</b> (별지 1호 서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무경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상세히 기재</li> <li>자필 서명 필수</li> </ul>
2. 자기소개서 1부 : <b>필수서류</b> (별지 2호 서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 자유)</li> <li>자필 서명 필수</li> </ul>
3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4호 서식) : <b>필수서류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필 서명 필수</li> </ul>

<p>4.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: 필수서류</p>	<p>· 장애인증명서 사본 제출</p>
<p>5. 주민등록초본 1부 : 필수서류 ※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</p>	<p>·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</p>
<p>6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: 해당자 (필요시 별지 3호 서식 활용)</p>	<p>·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· 근무기간(연·월·일)·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·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 ·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※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 첨부 가능</p>
<p>7. 자격증 사본 1부 : 해당자</p>	<p>· 최종시험(면접시험)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, 국내 자격증만 해당</p>
<p>8. 학위증명서 사본 1부 : 해당자</p>	<p>· 전공분야 표기</p>

## 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(☎044-200-28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